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중 FTA 협정에서 무역기술장벽
규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echnology Barriers to
Trade TBT in Korea-China FTA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徐 苗

2018年 8月

한·중 FTA 협정에서 무역기술장벽 규정의 비교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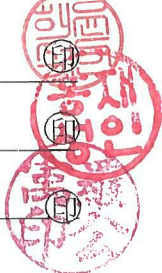
指導教授 羅 公 祐

徐 苗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8月

徐苗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최	윤	성	
委 員	홍	재	영	
委 員	라	공	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8月

A Comparative Study on Technology Barriers to Trade TBT in Korea-China FTA

Xu Miao

(Supervised by professor Kong Woo La)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ugust. 201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Hur, Yun Seok

Hong, Jae Sung

La, Kong Woo

August. 2018.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구성	3
제2장 선행연구의 분석 및 무역기술장벽의 통보내용	5
제1절 선행연구의 분석	5
제2절 무역기술장벽의 통보내용	6
1. 무역기술장벽의 정의 및 발생요인	6
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10
3. WTO/TBT협정의 주요 내용	11
4. 한/중국의 기술무역장벽 현황	21
제3장 한·중 FTA 협정에서 무역기술장벽의 내용	30
제1절 한·중 양국이 체결한 FTA 무역기술장벽 규정 비교분석	30
1. 한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기술장벽 규정 내용	31
2. 중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기술장벽 규정 내용	36
3. 양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기술장벽 비교분석	40
제2절 한·중 FTA를 통한 무역기술장벽의 내용	41
1. 투명성	41
2. 국제표준	42
3. 적합성 평가절차	43
4. 공동협력	45
제4장 한·중 FTA 협정에서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8
제1절 한·중 FTA 협정에서 무역기술장벽 규정의 문제점	48

1. 투명성의 부족	48
2. 기술표준 및 기술규정의 부족	49
3. 상호인정의 활성화	50
제2절 한.중 FTA 협정에서 무역기술장벽 규정의 개선방안	51
1. 투명성 개선	51
2. 기술표준 및 기술규정의 강화	51
3. 상호인정 단일화	52
제5장 결론	53
1. 연구의 요약	53
2. 연구의 한계점	54
참고문헌	55

<표 목 차>

<표3-1>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	30
<표3-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31
<표3-3> 한국 FTA TBT협정의 현황	32
<표3-4> 중국의 FTA 추진 현황	36
<표3-5> 한중 FTA TBT 투명성조항 분석	42
<표3-6> 한중 FTA TBT 적합성평가절차조항 분석	45
<표3-7> 각국 주요 기체결 FTA TBT협정문 비교표	47

<그림 목 차>

<그림1-1> 연구의 구성	4
<그림2-1> 한국 연도별 TBT통보문 건수(2005년~2017년)	21
<그림2-2> 중국 연도별 TBT통보문 건수(2005년~2017년)	2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글로벌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통합체도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실상 세계무역 대부분이 지역 경제 내에서 발생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처럼 수출을 위주로 하고, 무역이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영향력이 매우 큰 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의 무역액 증가, 또는 무역 경쟁에 대응하거나 자유무역구역을 통해서 지역 경제일체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무역을 활성화 시키고, 관세를 인하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국 간에 무역량은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비관세장벽이 한국과 중국의 더 큰 무역 증대를 저지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더 발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같은 제도적 통합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12년 5월 2일 협상을 베이징에서 개시하여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냈고, 협상 개시된 3년 만인 2015년 6월1일 협정문을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한국 정부는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 이후, 중국도 2015년 12월 초에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다. 12월 9일에 한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FTA협정을 확정하는 외교부가 같은 달 20일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무역기구(WTO)중의 특정 제도(WTO Plus)라고 부른다. FTA는 WTO협정상 WTO의 '예외'에 해당한다.

양 국가가 FTA를 맺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양 국가가 모두 WTO와 FTA의 당사국이고 만약 FTA와 WTO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FTA상의 조항이 양 당사국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WTO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FTA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내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WTO 협정이 적용된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점차 늘고 있는 무역수지 불균형과 직접투자 관련 마찰 등도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FTA도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FTA를 체결한 나라 사이의 무역자유화가 경제력이 약한 국내생산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개도국이지만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단계라서 FTA에 체결에 양국의 경제에 대해서 충격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조업과 농산품이 한국의 중소형 기업과 농업에 대해서 충격이 클 것이며, 한국 국내 실업률도 증가한다. 수입으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큰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다. 중국은 그 동안 자국의 경제개발과 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 비관세장벽을 행사한다. 다자간 FTA에 기초한 WTO체제가 강화되고 쌍방 혹은 지역 간 FTA가 광범위하게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 수량규제 또는 수출자유규제 등과 같은 보호무역수단의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로인해 각국은 자국의 수입 경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적 수단으로 조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등과 기타 비관세조치들이 나온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표준 및 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말한다.

이와 같은 무역기술장벽을 제재하게 되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여줘 수출 확대에 부여할 수 있다.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차원의 진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애로를 해소 가능하다. 한국의 수출기업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큰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고 특히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은 한·중 무역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 중국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TBT를 강력하고 복잡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WTO/TBT 당국에 제소되는 건수가 2002년부터 2015년 3월 1000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무역장벽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중국은 2002년 이후 매년 1000여건 이상의 국제표준이 수정 또는 제정되어왔으며 이러한 국가표준은 전자산업, 섬유산업 등에서 폭 넓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은 한·중 FTA 협상의 핵심 의제로 대두되었다. 적합성 평가는 기술표준, 기술규

정 등 관련한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험, 검사, 검증 평가 및 알맞은 인증, 보증 등록 및 승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무역장벽이 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양측은 FTA 협정을 통해 양국의 기술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양국의 무역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중 FTA 무역에 대한 기술협정은 양국 간 비관세장벽을 완화시킴으로써 상호 무역을 확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FTA 무역에 대한 기술 협정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국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협정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중 수출입기업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로 한·중 FTA 협정에서 무역기술장벽 규정의 비교연구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WTO/TBT의 통보내용, 한·중 양국 각 추진 FTA과 FTA/TBT협정의 현황, 한·중FTA의 TBT 내용, 이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술 연구 한·중국 논문, 문헌, 연구 보고서, 통계자료, 서적, 신문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기관 사이트를 통해서 FTA의 기초이론, 기술장벽 이론 및 FTA 협정문, 한중 양국 각 체결한 FTA/TBT 협정의 현황들은 분석함으로써 한·중 양국 간 법령상의 기술적 장벽 규정에 관하여 문헌연구 통해 한국과 중국의 최근 문헌과 경향도 참고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논문 연구의 목적, 방법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논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TBT협정, 발생요인,

TBT유형, WTO/TBT의 내용, 및 한·중 TBT현황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기술적 장벽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 양국 간 체결한 FTA의 TBT 규정 및 한·중 FTA를 통해 TBT의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FTA협정에서 TBT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논문 연구의 요약 및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였다.

그림<1-1>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의 분석 및 무역기술장벽의 통보내용

제1절 선행연구의 분석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지금까지 기술 장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각 산업의 기술 장벽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기술장벽과 FTA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 감독의 영향력이 국가 특성, 산업 특성 및 회사 특성에 어떻게 의존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왕상한(2005)¹⁾, 먼저 현 WTO/TBT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쿄 라운드에서 TBT 협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이를 일부 개정하고 강화시킨 현 WTO/TBT 협정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盛美娟 (2005) ²⁾, 기술무역장벽의 특성과 새로운 경향에 대해 기술하고 기술 무역장벽이 중국 수출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수출무역이 기술무역장벽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陳樸 (2003) ³⁾ 중국의 대외 무역이 자주 직면한 외국 기술장벽의 현황 및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산업 협회가 기술 장벽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孫麗麗 (2008) ⁴⁾ 중국의 기술적 장벽에 대한 현상 및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에 존재하는 문제 및 무역 시스템에 대해 중국의 기술적 장벽을 개선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薄明瀾 (2011) ⁵⁾ 무역 장벽의 정의를 설명하고, 기술적 무역 장벽의 경제적 효과가 중국 대외 무역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현상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 모색, 기술적 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중국의 기술 무역 보호 시

1) 왕상한, 신문사, 'WTO뉴라운드와 기술무역장벽', 2005

2) 盛美娟, 關於應對技術貿易壁壘新趨勢的思考, 煙台大學, ECONOMIC SURVEY, 2005年 第5版

3) 陳樸, '我國遭遇技術壁壘的現狀及行業協會在其中應發揮的作用', 經濟與管理, 探求2003年 第2期

4) 孫麗麗, 完善我國技術貿易壁壘體系思考, 中共山西省黨委會, 理論探索, 2008年第6期

5) 薄明瀾, 淺析技術性貿易壁壘與我國對外貿易, 中南財經政法大學經濟學院, International Trade, 2011

시스템을 신속히 개선하고자한다.

郭林宇외 3인(2012)⁶⁾ 중국의 농산물 한국으로 수출 상황, 한국의 기술무역 조치의 이행 현황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한국의 무역장벽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대책을 제안한다.

김인지(2012)⁷⁾ 본 논문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기초 연구 및 한·중 양국이 체결한 FTA의 TBT 규정 비교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 시 TBT 분야의 협상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田宇鎮(2014)⁸⁾ 이 논문은 기술무역의 정의 및 한중 교역현황, 중력모형의 대해 분석하고 한·중 기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중 기술무역장벽 현안과 대응 방안을 기술했다.

안주석(2018)⁹⁾ 한·중 의료기기산업 현황, 의료기기에 대한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한·중 FTA를 통한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의 대응방안을 기술했다.

본 논문에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의 주요내용 중, TBT협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각국이 체결한 FTA의 TBT 내용과 그 정책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절 무역기술장벽의 통보내용

1. 무역기술장벽의 정의 및 발생요인

국제 무역의 기술장벽은 수입국의 국내 법률, 규정, 조례, 명령 등을 통해서, 강제적 또는 비강제적인 일부상품의 규정된 기술, 포장, 상표 등의 표준, 그리고 상품의 품질과 성능을 검사할 때, 그 상품은 수입국에서 이미 설정된 품질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10)기술무역장벽을 장려하는 목적은 상품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6) 郭林宇, 韓國農產品技術性貿易措施研究, 國際交流, 2012年9期

7) 김인지, '한중 FTA 추진 시 기술장벽 부문의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8) 田宇鎮, 'FTA 시대 한중 기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忠南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4

9) 안주석,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0) 중국TBT연구센터 <http://tbt.testrust.com>.2018.02.27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 무역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어려운 비관세 장벽이다. 일반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은 수입국의 기술 규정, 법률 및 표준 등에서 기원한다. 수입국에 따르면 기술 규정, 법률 및 표준 등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A국의 생산자가 B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면 B국의 기준에 합격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통 기술 규정, 법률 및 표준 등 국가마다 다르다. 만약 한 나라에 자주 지진이 발생한다면 건축 자재에 대한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한 나라에 심각한 대기 오염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평균 개인소득이 높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이 있을 것이다.

무역 장벽으로 인한 기술규제는 일반적인 무역장벽과는 달리 국경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의 과정, 선적 전 및 수입국의 유통 과정,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폐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술규제 상당 기간 그 수준이 고정되며, 점차 완화, 철폐되고 있는 일반적인 관세장벽 및 수량제한 등과는 다르게 기술발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고 신 기술규제가 개정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 장벽은 기술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한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하다.¹¹⁾

WTO TBT 협정 이란 WTO('95년 출범) 전체 회원국(157개국/12년 말)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력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¹²⁾

국제 무역에서 기술 장벽은 비관세 장벽으로써, 관세 장벽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기술 장벽의 은폐특성

기술 장벽은 국제 무역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작용된다. 보호는 은폐하고 영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공정한 표준과 규정에서 국가 간의 개발 수준과 일부 인적 요인의 차이를 반영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11)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knowtbt.kr/main.do>, 2018.03.02

12) “WTO/TBT 협정문”, <TBT 개요>, <http://www.knowtbt.kr>, 2018.03.17

것을 제한하게 된다.

2) 관리의 합법화

여러 나라의 상품관리의 제도화 및 합법화로 인해 국가는 완전한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한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EU는 이미 안전, 보건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약 10만개 이상의 표준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과 규정은 더욱 개선 되고 있다.

3) 엄격한 규제 및 표준

각국은 자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저해하고 표준 및 규정에 대해 끊임없는 노력 해야 한다. 원래 표준 및 규정을 엄격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미국국가의회의는 1990년에 승인한 "영양 기준 및 교육법", 식품 관리 강화, FDA는 올바른 영양 표시를 관리하고, 또한 그 후 FDA관련 법률 "유아 의약품법", "차 수입법" 및 "유아 식품법"을 제정한다.¹³⁾

경제적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의 발전으로 WTO 규칙의 관련 제한과 더불어 국제 무역 장벽의 유형과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관세율은 점점 낮아지고 전통적 비관세 장벽은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술 장벽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범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새롭고 유연하며 더 숨겨진 무역 장벽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했으므로 국제 무역에서 우리는 WTO 규범과 관련 국제 관행에 따라 행동해야한다.

국제 무역 보호 수단으로서 기술 무역 장벽 강화에 대한 더 깊은 원인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제 관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경제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국가들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추가 관세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다양한 비관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경쟁은 점차 치열 해지고 있으며, 무역 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WTO 정신에 반하는 전통적인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숨겨진 기술 무역 장벽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으며 수많은

13) 那力, 何誌鵬 《wto與環境保護》, 吉林出版社 2002. p211~214

이름과 요구 사항이 있다. 선진국 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그리고 개발도상국 간 무역 장벽이 있다. 기술 수준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무역 장벽은 개발도상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WTO 협정의 많은 예외와 허점은 또한 기술 장벽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국가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국가 간의 부당한 차별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이행 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그들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보호 수준이 적절한 '국제 기준, 지침 및 권고보다 높은 수준을 이행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조치'임을 확인한다. 이는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큰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 및 국제 환경 보호 단체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정부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경우 관련 장벽을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고려하고 관련 분야에서 양보해야 한다. 환경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국제 사회의 주목을 불러 일으켰으며, 1970년대 이후 그린피스(Greenpeace), 국제환경영화그룹(International Environment Film Group),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등과 같은 세계적 환경 보호 단체가 차례로 설립된다. 그들은 많은 국가에 지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의 모든 환경 파괴 행위에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정부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U는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인간의 건강과 삶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 보호 단체의 압력으로 환경 보호 기준의 요구 사항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뿌리 깊은 개념은 국가들이 무역 장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지원한다.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세계 환경 문제는 모든 국가의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끌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국가들은 WTO 정신을 위반하는 일부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사람들의 건강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과 같은 보호 기준,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일반 대중의 희망과 일치한다. 이것이 기술 장벽이 심화된 주된 이유이다.¹⁴⁾

2. 무역기술장벽(TBT)의 유형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WTO의 협정은 기술 규정, 기술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로 무역 장벽을 분석하고 있다.

1) 기술 규정

기술 규정은 기술 조항,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제품, 프로세스 또는 생산 방법에 대한 표시 요구 사항과 같은 적용 가능한 규정을 포함하여 필수 제품 기능 또는 관련 프로세스 및 생산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기술 표준

기술 표준은 제품 또는 관련 프로세스 및 생산 방법의 일반적인 사용 또는 반복 사용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의 비집행을 제공하는 인정된 기관의 승인을 받은 문서이다. 기술 규정 및 기술 표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차이점은 전자는 의무적인 반면, 후자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3) 평가 절차

적합성 평가 절차는 기술적 규칙 및 표준에 따라 국제 표준화기구 (ISO)의 조항에 따라 생산, 제품, 품질, 안전, 환경 및 전체 세이프 가드 시스템의 기타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검토 및 검사를 의미한다. 검사를 통과 한 후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요구되는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 또는 외국 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서 또는 적합성 표시를 수여해야 한다.

14) 盛美娟“關於應對技術貿易壁壘新趨勢的思考”，煙台大學，2005,pp.42~43.

적합성 평가 절차에는 제품 인증 및 시스템 인증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제품 인증은 제품이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시스템 인증은 생산 또는 관리 시스템이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다. 가장 인기 있는 현대 국제 시스템 인증은 ISO9000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및 ISO14000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이다.

TBT 협정 부록 I의 '적합성 평가 절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샘플링, 시험 및 검사 절차, 적합성 평가, 검증 및 보증 절차, 등록, 인정 및 승인 절차 및 그 조합을 포함한다.

3. WTO/TBT협정의 내용

1995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제정된 무역 장벽에 관한 기술 장벽(TBT 협정)과 위생, 식물 위생 조치 이행 협정(SPS 협정)에 관한 두 가지 WTO 문서가 있고 실행을 시작한다.¹⁵⁾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은 법률, 법령, 규정, 기술 기준의 확립, 인증 시스템, 검사 시스템 및 기타 외국 수출입 제품의 과도한 엄격한 기술 표준 개발을 통한 무역 수입 통제의 이행을 통한 상품 수입 및 수출의 국제 무역 표준이다. 위생 검역 기준, 상품 포장 및 라벨링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수입 제품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높이고 수입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수입 목적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 조치를 달성한다.

현재 국가 중 특히 선진국이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조성하고 무역 보호주의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식품, 기계 및 전기 제품, 직물 및 의복, 정보 산업, 가전제품, 화학제품 및 의약품(가공, 포장, 운송, 보관 등을 포함하는 1차 제품, 중간 제품 및 완제품 포함)의 모든 영역 다루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인 WTO / TBT 협정은 WTO 무역 상품위원회(WTO Commodities Trade Committee)의 관할 있는 몇 가지 합의 중 하나이다. 국제 무역에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15) 중국TBT연구센터, <http://tbt.testrust.com>, 2018.03.02

조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기술 무역 조치'라고도하는 기술 장벽은 국가 또는 지역 안보를 지키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 및 제품 품질을 보장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국가 또는 지역기구를 의미한다. 기술적 조치 중 일부는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공표를 포함한다. 기술 무역 조치는 실제로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영향이 지나치면 기술 무역 장벽이 된다.

기술 무역 조치의 출현은 심오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각국의 인문학 개념, 경제 발전 및 과학 기술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의 법률, 규정 및 기술 표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역 장벽이 조성 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는 특수한 기술 규정 및 표준을 수립하고 제품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향상시키고 외국 제품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적합성 평가 절차 및 표지판 시스템을 수립한다. 수입 제한은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무역 마찰을 야기한다.

경제 세계화 시대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야기된 관세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기술 보호 조치가 무역 보호 조치로 점차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 무역 발전에 새로운 장애물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당사국은 기술 조치를 규제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획일적인 국제 규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970 년에 GATT는 국제 무역에 대한 비관계 장벽의 영향을 평가하고 기술 표준 및 품질 인증 절차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정책 실무 그룹을 설립한다. 동시에, 워킹 그룹은 기술 장벽을 막기 위한 협상 초안을 작성한다. TBT 협정이 처음 성립한 것은 1979년 GATT의 도쿄라운드에서였다.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시키는 '비관세장벽'중 기술무역장벽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쿄라운드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비준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이른 바' 복수무역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형식으로 '무역상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탄생한 것이다. 이 협상은 모든 회원국이 아닌, 비준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GATT의 비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인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TBT협정이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거듭 태어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였다.

1980년 1월 1일에 'GATT / TBT 협정'이 발효되어 도쿄라운드의 훌륭한 결과로 간주된다. 16) GATT 제 8 차 협상 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참가국들은 GATT / TBT 협정을 논의하고 개정하여 1994년 4월 각료회의 최종 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최종 결정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다른 결의안의 발표와 함께 끝났으며 세계 무역기구 (WTO)의 중요한 합의가 되었고, 모든 회원국은 동등하게 구속력을 갖는 "WTO / TBT 협정"으로 개명된다, 이것은 WTO/TBT 협정의 발생 배경이다.

WTO / TBT 협정의 목적은 국제 무역 자유화 및 촉진을 촉진하고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표시 및 표시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한 국제 조정을 수행하고 차별적인 기술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무역 보호주의의 주요 형태는 국제 무역에서 기술 장벽을 최소화하고 세계 경제 세계화에 기여한다. 협정의 설립은 국제 무역의 발전과 무역 규제 보호의 도구로서 기술 규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인증제도 등)의 사용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WTO / TBT 협약은 산업 제품 및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 조달 기관에 의해 공식화된 조달 규정은 WTO / TBT 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협약은 동식물 건강 및 검역 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쟁점은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이행 협정 (WTO / SPS 협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구조

16) 왕상한, 'WTO뉴라운드와 기술무역장벽', 신론사, 2005, P26~29

'WTO / TBT 협정'은 6개의 주요 부분, 15개의 기사, 129개의 기사 및 3개의 첨부로 나누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기술적 조치를 공식화, 채택 및 시행 할 때 지켜야 할 규칙,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통지, 평가, 상담 및 검토 시스템이다.

제1부 주로 무역 장벽을 논의 할 때 문서에 명시된 용어 사용을 설명한다.

제2부 기술 규정 및 표준은 중앙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및 비정부 기관이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국제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문서 초안에서 통보되어야 한다.

제3부 기술 규격 및 표준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는 적합성 평가에서 공통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다른 국가의 인증 결과를 가능한 한 인정하고, 모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제 및 지역 적합성 평가 활동에 참여한다.

제4부 정보 및 지원은 주로 자문 기관의 설립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논의한다. WTO는 국가 별 WTO / TBT 협의 포인트를 수립하고 회원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절차 초안은 정부가 WTO 사무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나타낸다. WTO는 다른 회원, 특히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WTO / TBT 협정의 특정 조항들과 관련하여 TBT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발도상국들은 일정 기간 동안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5부 협의 및 분쟁 해결은 주로 WTO / TBT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TBT위원회는 각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원국의 협약 이행 검토를 위해 매년 마다 1회 개최된다. 이것은 분쟁 해결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WTO의 매우 효과적인 조치이다.

제6부 마지막 조항은 각 회원국은 WTO 가입 시 WTO / TBT위원회에 통보하고, 이 협정의 조항 이행을 약속하고, 취해진 관련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다른 WTO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회원도 이 협정의 조건을 유보할 수 없다.

WTO / TBT 협정의 부속서에서 사용 된 용어 및 정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전문가 그룹, 표준의 개발, 채택 및 시행을 위한 우수 사례 코드가 명시되

어있다.

3) 기술적 조치의 수립, 채택 및 이행의 원칙

회원국은 기술 조치를 수립, 채택 및 이행함에 있어서 세계 무역기구의 차별 금지 및 투명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수입 휘발유 분쟁 사건이다. 1994년9월 미국 환경 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청정 공기 법 (Clean Air Act)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솔린 보다 수입 가솔린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규정한다. 1995년 1월 베네수엘라는 세계 무역기구 분쟁 해결기구 (WTO)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관행이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차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WTO)는 베네수엘라가 이 사건에서 승리했다고 판결한다. 기술적 조치가 국제 표준에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회원에 의해 수행될 때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큰 영향은 그들이 의견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허용, 세계 무역기구 (WTO) 사무국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다른 회원이 제출한 서면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회원이 요청한 경우 토론하고 토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신속히 발표하고, 출판과 발효 사이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관련 생산자와 거래자가 요구 사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은 기술적 조치를 공식화, 채택 및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필요성의 원칙

회원국은 합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만 취할 수 있다. 회원이 취한 기술적 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취한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해야 한다.

(2) 무역 영향 최소화의 원칙

회원국은 무역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합

법적인 목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후,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취해진 기술적 조치는 합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험을 평가할 때는 관련 과학 기술 정보, 관련 가공 기술 또는 제품의 최종 용도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환경 및 목적의 다른 변화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기술 조치가 제거되어야 한다.

(3) 조정 원칙

회원국 간의 기술적 조치의 차이로 인한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회원국들은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한다. 회원국은 국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지침의 개발에 있어서 국제 표준화 기구의 업무 범위 내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의 업무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회원국은 동일한 법적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는 한 다른 회원국의 기술적 조치를 동등한 조치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WTO / TBT 협정은 여러 테스트, 제품의 검사 및 인증으로 야기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피하고 상업 비용 및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회원국들은 협상을 하고 적합성 평가 협약에 대한 상호 인정을 달성하도록 장려한다.

(4) 특별화 및 차별화 원칙

회원국들은 개발 도상 회원국이 개발, 재정 및 무역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 표준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기술적 조치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을 지라도 개발 도상 회원국은 자신의 기술, 생산 방법 및 개발 필요성과 양립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기술 및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특정 기술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회원국은 국제 표준화기구가 개발 도상 회원국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진 회원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적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때 기술 장벽 기술위원회는 그 의무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특정 시간 제한 예외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의 특별 쟁점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4)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1) 기술 규정

기술 규정은 제품 특성이나 관련 프로세스 및 생산 방법에 대한 필수 조항이다. 주로 정부가 제정한 관련 법률 및 규정, 정부가 공포한 관련 명령, 결정 및 규정, 관련 기술 사양, 지침, 지침, 기술 용어, 기호, 포장재, 표지판 또는 라벨링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일부 국가는 비정부기구가 기술 규정을 제정하도록 승인한다. 'WTO / TBT 협정'은 회원국이 가능한 한 설계 또는 기술 특성보다는 제품 성능에 따라 기술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 규정은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 제품 안전, 환경 보호, 노동 보호 및 에너지 보존 측면을 포함한다.

회원국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기술 규정을 제정, 채택 및 이행하고 WTO / TBT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국제 표준이 이미 존재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회원국은 기본 기후 요인, 지리적 요인, 기본 기술적 문제 및 기타 이유로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지 않는 한 기술 표준의 기초로서 표준 또는 관련 부분을 채택해야 한다. 법률의 관련 부분은 법적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2) 표준

표준은 공인된 기관의 범용 또는 재사용, 제품 특성 또는 관련 프로세스 및 생산 방법의 비집행에 대해 승인한 규칙 또는 지침을 가리키며, 특정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표준화기구의 요구 사항은 'WTO / TBT 협정'에 첨부된 '표준의 수립, 채택 및 이행을 위한 우수 실행 규범'에 반영되어 있다. 이 표준은 모든 표준화기구가 국제 표준을 채택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국제 표준화기구의 활동에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의 중앙 정부 표준화기구는 규범을 수용하고

준수해야하며,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의 다른 표준화기구의 행동을 규범에 일치시킬 의무가 있다.

세계 무역기구 (WTO)는 '표준의 공식화, 채택 및 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 규범'의 통고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두 가지 결정을 채택한다. 첫째, '세계 무역 기구와 국제 표준화 기구가 표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공식화하는 것', 이 결정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 표준 정보 서비스기구'가 제네바에 설립되어 '표준의 수립, 채택 및 시행을 위한 우수 실행 규범, 서명국의 통보를 수집하고 발간한다. 두 번째는 '국제 표준 검토'이다.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 정보 센터 조직 및 출판 결정은 '표준의 수립, 채택 및 시행을 위한 우수 사례'의 서명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3) 적합성 평가 절차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품이 기술 규정이나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이다. 주로 샘플링, 검사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자격 보증, 등록, 승인 및 승인 및 상기 절차의 조합이 포함된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인증, 인정 및 상호 인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가. 인증

인증은 인가된 기관이 발급 한 인증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제 3자는 특정 사물, 행동 또는 활동의 본질 또는 특성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 또는 객체를 검토한 후에 발행되며 일반적으로 '제 3자 인증'이라고 하다. 인증은 제품 인증과 시스템 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인가

인가는 기관이나 개인이 특정 업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당국의 확인을 의미한다. 주로 제품 인증기관의 인정, 품질 및 경영 시스템 인증기관의 인정, 실험실 인증, 감사 기관 인증, 감사관 또는 평가사의 인가 및 교육 기관 등록이 포함된다.

다. 상호 인정

상호 인정이란 인증 또는 인정 기관이 상호 인정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상호 인증 또는 인정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WTO / TBT 협정은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상호 인정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하도록 장려한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 기관이 자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적합성 평가 기관보다 낮은 조건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TO / TBT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체 기술 규정이나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한 국제 표준화 기구가 발행했거나 준비할 지침 또는 권고를 적합성 평가 절차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국은 국제 적합성 평가 제도를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국내 관련 기관이 국제 또는 지역 적합성 평가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통지, 의견, 상담, 심의 및 분쟁 해결

(1) 통지 및 의견

WTO / TBT 협정은 회원국의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개발, 채택 및 시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이 채택할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가 관련 국제 표준 또는 관련 국제 표준 중국의 기술적인 내용은 일관성이 없으며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원은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통보 내용은 제안된 조치의 목적과 이유 및 해당 제품을 포함하며 통지 시간은 조치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고, 수정할 수 있는 규정된 시간 제한 내에 있어야 하며, 통보 채널은 기술위원회의 무역장벽을 통해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회원 공지 또한 회원이 기술 규칙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가 개발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위원회에 통보한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회원은 초안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차별 없이 타 회원에게 적절한 시간 (보통 최소 60일)을 제공한다. 다른 회

원이 작성한 의견은 회원이 고려해야 한다. 인권, 보건, 환경 보호, 국가 안보 등 긴급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그러한 문제의 위협에 직면한 경우, 회원국은 일부 단계를 생략하고 긴급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신속히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비상사태 이외에 회원국은 조치 발간과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다른 회원, 특히 개발 도상 회원국의 회원국이 수입 회원국의 요구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 정부 직속 지방 정부 기관이 개발, 채택 및 시행 한 기술 조치는 중앙 정부를 통해 통보된다.

(2) 상담

회원국은 기술적인 무역 장벽에 대한 협의 포인트를 설정해야 한다. 조사단은 다른 회원 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문에 답변하고 중앙 정부 기관, 지방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구가 채택하거나 제안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 또는 지역 표준화 기관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에 가입하거나 참여한다. 회원이 하나 이상의 질의 지점을 설정하는 경우, 각 질의 지점을 책임 범위에 대해 완전하고 명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검토 시스템 및 분쟁 해결

세계 무역기구 (WTO)는 WTO / TBT 협정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설치한다. 위원회는 모든 회원들의 대표로 구성되며 적어도 일년에 한 번씩 만난다. UN 식량농업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옵서버로서 회의에 참석한다.

WTO / TBT 협정의 운영과 이행에 관한 기술장벽은 1995년에 시작되어 3 년마다 검토되었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WTO / TBT 협정에 대한 개정안을 권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규칙은 기술 무역 장벽을 분쟁 해결에 적용한다. 분쟁 해결 패널은 자체 발의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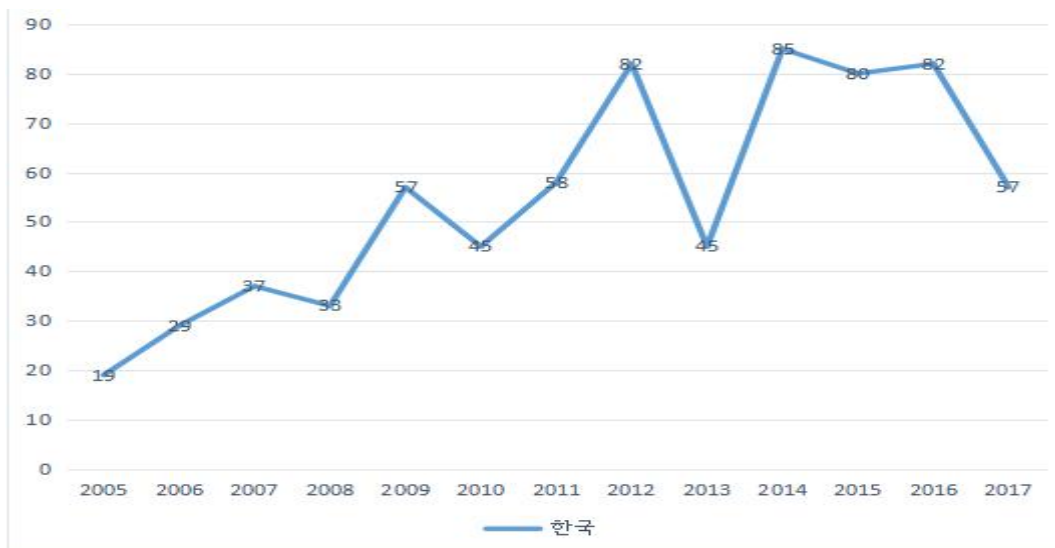
이상은 WTO/TBT협정의 주요내용이다.

4. 한/중국의 기술무역장벽 현황

1) 한국의 기술무역장벽 현황

<그림 2-1>와 같이 한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TBT 통보 건수가 총 709건이며, 2017년 상반기에는 22건으로 세계 17위를 차지했고 WTO / TBT 회원국의 통보 총량의 1.65%를 차지한다. 특히 2008년부터 2009년까지 TBT 통보 건수가 33건에서 57건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TBT통보 건수가 82건에서 45건으로 줄었지만 2014년에도 85건으로 증가했다.

<그림2-1> 한국 연도별 TBT 통보문 건수(2005년~2017년)



자료: WTO, (www.i-tip.wto.org) 2018.06.05.

한국은 2008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술관리 이사회에 포함된데 이어 2009년 ISO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기술관리 이사회와 이사회 모두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 및 독일 등과 함께 국제 기술 표준화 활동에서 우위에 서

게 되었다. 한국은 2009년에는 반도체 및 디지털 등 기타 주요 분야에서 기술 표준 제안 건수가 20건, 일본의 22건에 이어 세계2위를 기록한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 풍력에너지, 연료전지 및 해양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1967년에 GATT에 가입했다. WTO 협정에서 허용 된 관세 및 시장 접근 통제 조치의 완전한 사용 이외에도, 협정의 '회색 검역 및 검역과 같은 기술 표준 측면' 에서도 지대는 수입 물품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장벽을 설정하고 농수산물 수입 제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술장벽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운행범위

가. 과일, 채소 및 기타 농산물

1998년 말까지 5개 국가 및 지역에서 17개 품종이 추가 조건 (증기 열, 저온, MB, KB 처리)으로 한국 시장 진입 승인을 받았다¹⁷⁾.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브랜드이다. 칠레 키위, 포도, 대만 리치, 오렌지, 망고, 미국 쉘 호두 등 상기 품종에 대한 한국 수입 면허는 수출국에서 주요 해충 및 질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3단계 검토를 거쳤다. 포괄적인 분석과 연구를 거쳐 해충 및 질병의 위험성을 평가 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생산 현장에 가서 사실을 조사하고 소독 테스트를 실시 하여 검역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세 번째 단계는 양국 간 검역을 협상하고 수입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곡물에 대한 수입 제한은 주로 유전자 변형이나 운송 중 열화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의 과다 검출만 한다.

나. 다양한 종류의 고기

한국의 대부분의 고기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입하며, 미국의 압력으로 1992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쿼터제를 도입 한 후에 국내산 쇠고

17) 郭林宇, 韓國農產品技術性貿易措施研究, 國際交流, 2012年 第9期.

기와 수입산 쇠고기는 별도로 판매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동물과 식물의 검역을 위한 관리기구 및 협약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였다.

다. 자동차

세금 인상 조치 외에, 분류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는 수출 시, 중화학 제품으로 분류되나, 수입된 외국 자동차는 소비재로 분류되어 수입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고급 상품 구매 의향이 있으며 자동차 소음 감지의 경우 유럽과 미국보다 높다. 세무 당국은 수입차 구매 고객의 세무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탈세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흔한 현상이며, 이 방법은 수입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만든다. 유럽연합(EU)은 DOT 기술 기준에 의해 인증된 수입차용 타이어의 경우, 한국의 기술 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제 EU 및 DOT 기준은 한국 표준보다 높다.

라. 마약 및 화장품

수입 의약품은 한국인에게 임상 시험 자료를 제공해야하며 수입 의약품은 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화장품은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등의 아무 제한 없는 구역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은 제약 표준과 동일한 사전 심사 시스템을 사용한다.

(2)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수입 농산물, 자동차 등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둔 법률 및 정책 제정에 주로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과 수생동물, 고기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식품은 특별히 표시되어야 한다. 식품 가공업, 백화점, 슈퍼마켓 등 36만여 개가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1,000만원 (약 7,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 농업 협회는 수년간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표창했다.

'자국의 것이 최고이고, 자국의 땅에서 생산된 음식만이 건강에 좋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농업 협회 (Agricultural Association)는 전국적으로 농산물 및 수산물을 구매, 도매 및 소매 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농

산물을 수입하는 산업의 경우 농산물 판매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한국 제약 협회는 "한국 의약품 구매" 운동을 시작했다.

모든 주류 TV 매체는 국내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약 1시간)을 설치했으며 수입 농산물을 현장에서 국내 제품과 비교하고 도구 테스트 결과를 사용하여 문제를 설명한다. 이러한 관행은 수입 제품 판매를 억제하고 국내 제품의 상태와 영향력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3) 시스템 인증 시스템의 구현 현황

가. KS 마크 인증 시스템

KS 마크 인증 제도는 산업 표준법에 의거 한 국가 표준으로, 1960년에 시행된 이래 5년마다 그 규격이 적합한 지 여부와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한 번씩 검토 한 바 있다. 인증 시스템은 주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지만 안전 성능을 테스트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제품 뿐만 아니라 널리 생산되고, 사용되는 원자재 및 구 성품과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1998년 7월 24일 정부 기관에서 인증 업무를 38년간 수행한 후, 비정부기구인 한국 표준 협회로 이관되었다. 2000년 3월말까지 1024품종과 5438개의 공장이 있었고, 12,559개의 제품이 KS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 경제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KS표준의 14%만이 국제 표준화기구 (ISO)의 규격에 부합된다.

나. ISO 9000 인증 시스템

한국은 1992년 KS A9000 시리즈를 설립했다. 1993년에 '산업 제품 품질 관리법'을 '품질 경영 촉진법'으로 변경했다. 국내 ISO 9000 인증은 산업 진흥청에 의해 최초 인증기관인 '한국 품질 인증 센터'로 지정되었다. 1997년에는 '품질 경영 진흥법'이 개정되었고, '한국 품질 환경 인증 협회'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다. ISO 1400 인증제도

1995년 ISO 1400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한국 품질 환경 인증 협회'를 인증

기관으로 지정하여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 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KS A 1400을 설립하였다.

라. 환경 표지 시스템

현재의 환경 라벨링 시스템은 1990년 말 실행된 타당성 조사이다. 수집된 이물의 분석을 통해 구현 계획이 수립되고, 전문가 청문회가 열리고 대중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요구되며 환경 표지판이 공개적으로 요청된다. 위의 준비를 거쳐 1992년 4월에 '환경 표시 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같은 해 6월에 시행되었으며, 1994년 12월 22일에는 환경 표지로서 '환경 기술 개발 및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행되었다. 이 시스템은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정부 출연 기관 등 환경 인식 상품 구매를 우선시하는 제도를 수립한다¹⁸⁾.

환경 라벨링 시스템은 소비자, 기업 및 정부의 공동 참여이다. 환경부는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고 비정부기구의 환경 라벨링 협회는 대상 제품 선정, 환경 라벨 사용 인증 및 인증 제품의 후반 생산 관리와 같은 실제적인 사업의 수행을 책임지고 있다. 2000년 10월말까지 총 49종의 제품이 선정되었고, 111개의 제조 회사에서 생산된 147개의 제품이 환경 라벨로 인증되었으며 판매를 위해 시장에 진입했다.

마. 환경성과 기호 시스템 (환경 정보가 그래프로 표시되는 시스템)

환경부는 1998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이 시스템의 운영 방법, 절차 및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 기술 개발 및 관련 지원을 검토 하였다. 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2월 3일에 발표 됨) 시스템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제공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 D / B 구축 3 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기, 운송, 철강 및 합성 등 기초 산업을 확립하여 시스템 구축 시 관련 기초 수지와 같은 환경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 郭林宇, 韓國農產品技術性貿易措施研究, 國際交流, 2012年 第9期

(4) 무역 분쟁으로 야기된 기술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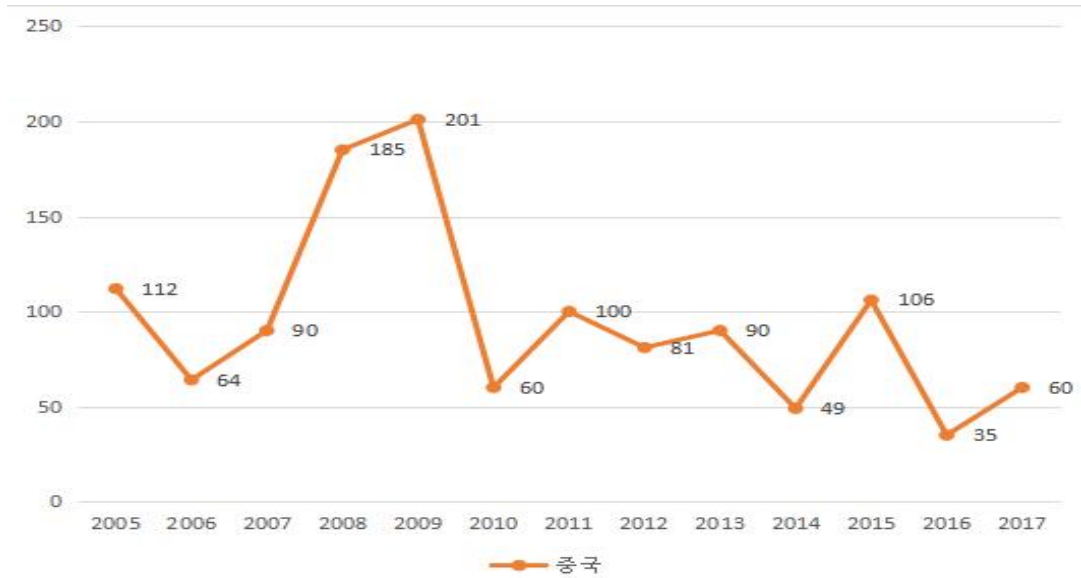
2001년 2월 21일까지 WTO 체제가 확립된 이래 WTO에 대해 총 226건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어 6건의 기소와 11건의 불만을 포함해 총 17건의 사례가 발생 하였다. 농산물 관련 불만 사례가 7건 (63 %)으로 수입 농산물 검역 및 식품 유통 기한 및 식수 수입 시스템에 관한 분쟁은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 되었으나 분유 수입과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 사이의 분쟁은 한국 소송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전형적인 분쟁의 예로 1999년 2월부터 4월까지 미국과 호주는 수입 쇠고기와 국산 쇠고기를 별도 판매 시스템으로 한국의 수량 제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축산업계는 GATT 제 3조, 11 등의 위반, 등등 보조금을 제공한다. 2005년 5월 1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패널 중간보고서에서는 한국은 쇠고기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반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축산업에 '차동 치료 유동 구조' 별도 판매 시스템의 국내 쇠고기 구현을 수입했다. 농업 협정 7월 WTO 패널 최종보고서는 한국의 쇠고기수입, 판매 및 유통 체계는 WTO 규정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소송 파티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완전히 한국의 순환 현실, 시장 상황 및 별도 판매의 필요성을 고려, 따라서 법의 해석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2000년 9월 11일에 최종보고서 결론에 관해서 항소했다.

2) 중국의 기술장벽 현황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TBT 신고 건수는 1233건에 달했다. <그림 2-2> 중국은 WTO 회원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 감독 통지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신기술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도입 및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그 중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TBT 통보 건수는 64건에서 201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통보 건수는 60건으로 증가했으며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그림2-2> 중국 연도별 TBT 통보문 건수(2005년~2017년)



자료: WTO, (www.i-tip.wto.org) 2018.06.05

현재 중국은 무역 장벽에 대한 제도를 처음으로 수립했으며 관련 기관도 차례로 설립되었다. 인증 및 인증 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탄생 이후 국제 무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역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기술 장벽 건설은 초기 단계에 있다.

(1) 무역 장벽의 예비 설치

1988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표준화법'을 공포 한 후 '표준화 이행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의 품질 법'을 연속적으로 발표했다. 2003년 8월 20일 국무원 제 18대 집행위원회는 중화 인민 공화국 규정을 2003년 11월 1일 발효된 인증 및 인정에 통과 시켰다¹⁹⁾.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자치구는 해당 지역 규정, 규칙 및 기타 규제 문서를 연속적으로 발간했으며 관련 표준 설정기구는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역표준 및 적용 범위가 다른 기업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기술 무역 장벽 규칙 및 표준의 제정은 무역 보호를 위한 기술무

19) 陳樸, '我國遭遇技術壁壘的現狀及行業協會在其中應發揮的作用', 經濟與管理, 探求2003年 第2期

역장벽의 중국사용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2) 무역 장벽을 관리하고 공식화하며 출판하는 기관 설립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 및 개혁과 개방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 사항에서 시작하여 중국은 1997년 WTO / TBT 조사 지점을 전 국가 관리 감독국 (State Administration of Technology Supervision)이 설립했다. 'TBT 협정'의 조항에 따르면 이 문의처는 주로 중국 정부가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통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수출을 보호 (www.wto-tbt.gov.cn URL), 중국의 수출 기업 수입국의 기술 요구사항을 적절하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2001년 중국 정부는 WTO / TBT 웹 사이트가 오픈했다. 2001년 4월 국무원은 국가 출입 검사 검역국과 품질 및 기술 감독국을 중화인민공화국 품질 감독 검역 총국에 합병했다²⁰. 분명히 세계무역기구(WTO) 법률 문서에 정의된 중국 품질 감독의 국가 관리는 검사 검역 자격의 개발에 모든 중국 정책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절차 및 다른 정부 부처에 대한 책임으로 "중국은 작업반 보고서에 합류" 정책과 절차를 평가하기 전에 품질 감독 총국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국가인증 및 표준화 업무의 통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 8월 29일 승인, 2001년 국가인증 및 인증 관리위원회를 설립, 2001년 10월 11일 국가 표준화 관리를 설립한 위원회가 있다.

(3) 인증 및 인증 업무가 활발하게 수행

현재 중국의 인증 업무는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인증은 단일 제품 품질 인증에서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 인증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8월 20일, 국무회의 제 18차 집행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규정을 인증 및 인정에 통과 시켰다. 이 규정은 중국이 통일된 인증 및 인증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법률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통일된 인증 시스템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및 인증 규정 발표로 세계 무역기구

20) 중국TBT연구센터 (<http://tbt.testrust.com/>), 2018.03.27

(WTO)의 약속을 이행하고 인증 및 인증 시장 질서를 추가로 조정 및 규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3장 한·중 FTA협정에서 무역기술장벽의 내용

제1절 한·중 양국이 기 체결한 FTA의 무역기술장벽 규정 비교분석

WTO TBT 협정문의 기초에서 WTO TBT 위원회에 제기된 주요 무역현안, 상대국과의 무역의 특성, 기업의 저해하는 사항을 기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의무나 조치가 추가된다. WTO에 제기된 주요 무역 저해 요소로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술규제에 대한 추가정보 및 설명요구, 두 번째, 불투명성, 세 번째, 합법성 및 근거요구, 마지막으로, 국제표준 비 준수 및 차별적 조치 등이 있다.²¹⁾

<표 3-1>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

투명성	*기술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개정 사항 통보, 정보공개 및 상대국 의견수렴(60일 이상), 국제표준 준수
협의 채널	*TBT위원회, TBT 조정자 협의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기술규제 현안을 직접 논의, 신속처리 노력
기술장벽 해소 메커니즘	*비차별적 대우(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적합성평가절차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법 강구 *적합성평가 상호인정(MRA) 근거 마련
분쟁해결	*TBT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우선)

자료: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knowtbt.kr/main.do> 2018.03.05.

FTA TBT 협정을 통해 기술 표준 및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개정 사항을 통보할 의무를 규정 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상대국의 의견 수렴을 보장한다.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에서 비차별적 대우를 철폐하도록 규정하며, 적합성 평가에 있어서 상호인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당사국간 협력방법을 강구하고, 양국 간 협의채널로 TBT 위원회를 두어, 이를 통해 기술 규제 현안을 직접 논의 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은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투명성, 협의 채널, 기술 장벽 해소, 메커니즘 및 분쟁 해결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21)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knowtbt.kr/main.do>, 2018.03.16

1. 한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 기술 장벽 규정 내용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표3-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15건)	타결(1건)	협상 진행 중(9건)	협상 재개·면건 조성 (4건)
*칠레 *싱가포르 *EFTA 22) *ASEAN23) *인도 *EU24) *페루 *미국 *터키(기본협정·상품 무역협정)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25)	*한·중·일 *RCEP26) *에콰도르 SECA *이스라엘 *한·ASEAN 추가자유화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한·미 FTA 개정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멕시코 *GCC27) *MERCOSUR28) *EAEU29)

자료: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world/> 2018.03.05.

한국의 지금까지 FTA 추진 현황을 <표 3-2>에서 기술한다. 한국은 2003년 자유 무역 로드 설립 이후 50개가 넘는 국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4년 칠레와 최초 자유 무역협정에 서명 한 후, 싱가포르, 유럽 자유

22)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3) ASEAN: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24)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프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이티아

25) 중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과

26) RCEP: ASEAN+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27) 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28)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9)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무역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인도, 유럽 연합,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의 총 54개국과 15건의 FTA협정을 기체결 했다.

그 외에도 한중미(5개국)에서 협정 타결을 한다. 그리고 한·인도네시아 FTA,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총 9건의 추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멕시코, GCC, MERCOSUR, EAEU의 총 14개국과 4건의 FTA협정을 재개면건 조성하고 있다.

2) 한국 FTA 무역 기술 장벽 협정의 주요내용

<표3-3> 한국 FTA TBT협정의 현황

구분	국가 및 지역	TBT관련장(또는 조항)	관련위원회
기 체 결 (15 건)	칠레	9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싱가포르	8장	TBT위원회
	EFTA	2.8장	TBT위원회
	ASEAN	14조(TBT/SPS통합 조항)	TBT/SPS 위원회
	인도	2.28(TBT/SPS통합 조항)	TBT/SPS 공동작업반
	EU	4장장	TBT코디네이터
	페루	7장	TBT위원회
	미국	9장	TBT위원회
	터키(기본협정, 상품무역 협정)	5장	TBT코디네이터
	호주	6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캐나다	6장	TBT위원회
	중국	6장	TBT위원회
	뉴질랜드	6장	TBT위원회
	베트남	6장	TBT위원회
	콜롬비아	6장	TBT위원회
타결(1건)	중미	6장	TBT위원회
협상 진행중 (4건)	중일		진행중
	에콰도르 SECA		
	RCEP		
	이스라엘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ats.go.kr/content.do?cmsid=61>)2018.05.03

<표3-3>에서 보이며, 한국은 현재까지 칠레,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페루, EU,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의 15건

FTA TBT협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중미 6개국과 FTA TBT협정을 타결하고 있다. 또는 중일, RCEP, 에콰도르, 이스라엘의 FTA TBT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1) 한·칠레 FTA TBT협정의 내용³⁰⁾

2004년 4월에 한·칠레 FTA협정이 한국에서 첫 FTA로 발효됨에 따라 양국은 표준 관련 조치 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칠레 FTA협정에서 TBT 협정은 WTO/TBT 협정문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첫째, 한·칠레 FTA TBT협정문에서 투명성 관련해서는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과정에 비정부인의 참여비차별을 허용한다.

둘째, 적합성 평가절차조항 분석은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MRA)협상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상대국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을 촉진하며,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가, 승인, 인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이다.

셋째, 공동협력조항 분석은 표준관련조치, 관련활동, 진행과정 및 체계개선을 위한 상호 정보 기술을 지원하고, 특정 관심 영역의 표준 관련 조치와 연계된 자국 기술 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표준화활동에 대한 양국 간 협력 표준 관련 조치, 국제협정 또는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2) 한·페루FTA TBT협정의 내용³¹⁾

첫째, 투명성조항 분석은 TBT 협정에 따라 통보에 관련하여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전달하고,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가 허용되며,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대국에게 제공한다. 시험샘플을 포함한 통관 역류제품에 대해 역류사유를 수입자 또는 대표자에게 즉시 통보한다.(한·중 TBT 제6.12조 국경조치 조항에 해당)

둘째, 적합성 평가절차 분석은 상대국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 기관 인정 또는 승인함에 있어 내국민대우 보장(may)과 양국 간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30) 한·칠레 FTA TBT협정문 참고

31) 한·페루 FTA TBT협정문 참고

의 상호 인정을 위한 자발적 약정 체결이 가능하다.

셋째, 공동협력조항 분석은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기관강화 및 인력양성, 표준화, 기술규제, 적합성 평가기관 협력 증진시키며, 정부·비정부 표준화 또는 적합성 평가 기관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제안 및 검토한다. 유사한 기술규정 개발 시 관련 정보, 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협력한다.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기관 강화 및 인력 양성, 표준화, 기술규제, 적합성 평가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개발 및 개선한다. 정부·비정부 표준화 또는 적합성 평가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제안 및 검토하고, 유사한 기술규정 개발 시 관련 정보 연구 또는 자료를 제공 협력한다.

(3) 한·상가포르 FTA TBT협정의 내용³²⁾

첫째, 공동협력조항 분석은 규제 이슈, 국제 표준 조화, 공급자 적합 선언(SDoC), 적합성 평가 기관 능력 검증을 위한 인정체계를 활용한다.

둘째, 적합성 평가 절차 조항 분석은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양국 적합성 평가 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장려하고, 상대국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신의 경비로 적합성 평가 기관에 대한 검증 절차에 참여가 가능하다.

(4) 한·뉴질랜드 FTA TBT협정의 내용³³⁾

첫째, 투명성 조항 분석은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 질의처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를 허용한다. 상품 이행 약점(제6.12조)의 적용 대상이거나 긴급한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대국 질의처에 TBT 관련 조치와 관련 이유를 통보하며, 상대국 요청 시, 채택되거나 제안 중인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적합성 평가 절차는 자국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를 인정하고, MAR협상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

32) 한·상가포르 FTA TBT협정문 참고

33) 한·뉴질랜드 FTA TBT협정문 참고

한다.

셋째, 공동협력 분석은 양 규제기관 간 협력 및 시장접근성 강화 등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분야 협력하고, 우수 규제 관행과 무역 촉진 관련 규제 사안에 대해 협력한다. 투명성, 국제 표준 부합화, 기술 규정 동등성, 적합성 평가 절차 수용 촉진 메커니즘 등 무역 원활화 계획 확인·개발·체결을 위해 협력한다. 작업반은 사안별로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5) 한·베트남 FTA TBT협정의 내용³⁴⁾

한·베트남 FTA TBT협정의 목적은 3가지가 있다. 우선,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이행의 개선을 통하여 양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원활히 한다. 또한,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양국 간의 공동 협력을 증진한다.

첫째, 투명성 조항 분석은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상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공중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한다.

둘째, 적합성 평가 절차 조항 분석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와 다르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하게 적용 가능한 기술 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추진하고 자국의 영역에 주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승인은 내국민대우이다.

셋째, 공동협력조항 분석에서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공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무역 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34) 한·베트남 FTA TBT협정문 참고

2. 중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 기술 장벽 규정 내용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표3-4>를 보면 현재 중국은 홍콩, 마카오,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대만, 코스타리카, 한국, 호주,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와 자유무역 협정을 총 14건³⁵⁾을 체결했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제 6차 중국-아세안 정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아세안의 10개국 지도자들은 '중국-아세안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2010년까지 중국-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를 완결하기로 결정했다.³⁶⁾

<표3-4>중국의 FTA추진 현황

기체결(14건)	타결(2건)	협상중(4건)	추진검토중(10건)
*홍콩	*조지아	*RCEP	*네팔
*마카오	*몰디브	*GCC	*모라셔스
*ASEAN		*한·중·일	*몰도바
*칠레		*스리랑카	*몽골
*파키스탄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페루			*피지
*코스타리카			*스위스(업그레이드)
*대만			*페루(업그레이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호주			

자료: FTA강국,KOREA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world/> 2018.03.05

2005년 11월 18일에 중국과 칠레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35) 중국FTA서비스사이트 <http://fta.mofcom.gov.cn> 2018.03.05

36) 중국-아세안자유무역협정문 참고

2006년 11월 24일에 중국과 파키스탄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2008년 4월 7일 뉴질랜드 협정에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은 중국과 선진국 간에 체결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2008년 10월 23일 중국과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2008년 11월 19일 중국과 페루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2013년 4월 15일 중국과 아이슬란드는 중국과 유럽 국가 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2013년 7월 6일 중국과 스위스는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³⁷⁾ 유럽과 세계 경제에서 중국과 상위 20개국 사이에 도달 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스위스 측은 중국 수출의 99.7 %에 대해 즉각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스위스 측 수출의 84.2 %에 대해 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2) 중국 FTA TBT협정의 주요 내용

(1) 중·칠레 FTA TBT협정³⁸⁾

첫째, 투명성 조항 분석은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제·개정과정참여불가). 최소 60일 간 상대국 서면의견 제시를 허용하고, 채택, 제안하는 표준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대국에만 제공한다. 양국 영역 내 표준화 기구는 ISO에 통지 되는 국가 표준의 제·개정을 제공하도록 상호 협력을 촉진한다.

둘째, 적합성 평가 절차 분석은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 수용 촉진 메커니즘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상대국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를 수용, 합의 가능하다. 적합성 평가결과를 수용 거부 시, 사유 제공이 의무이다.

셋째, 공동 협력 조항에 관해서 분석은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절차·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기술 조언, 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특정 관심 영역 표준 관련 조치와 연계된 자국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제

37) 중국과 스위스FTA협정 http://fta.mofcom.gov.cn/ruishi/ruishi_special.shtml 2018.03.05

38) 중·칠레 FTA TBT협정문 참고

적과 자발적인 인증관계에 대해 양국 간 협력 강화, 시장 접근 원활화를 위해 위험 분석 요소와 관련된 국제표준(ISO9000, 14000) 등을 고려하며, 소통 강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 중·페루 FTA TBT협정³⁹⁾

첫째, 투명성 조항 분석은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제·개정과정참여불가), 최소 60일 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를 허용한다.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그리고 시험 샘플을 포함한 통관 역류 제품에 대해 역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대표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둘째, 적합성 평가 절차 조항 분석은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 리스트 기관 인정 또는 승인함에 있어 내국민대우, 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결과 수용 합의(평가기관 기술능력 관련 시안 사전협의 가능), 강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각 강제 적합성 평가 절차의 표준 과정 기간을 공표하거나, 예상 처리 기간을 상호 공유하며, 강제 적합성 평가 절차가 필요한 특정 산업제품(HS코드)을 30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공동 협력 조항은 시장 접근을 위해 양국 간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분야 협력 표준화, 적합성 평가 및 계량 기관의 역량 강화, 그리고 첩터에 요구되는 인적 자원 개발 및 양성한다.

(3) 중·싱가포르 FTA TBT협정⁴⁰⁾

첫째, 공동 협력은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정보 교환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개발 또는 적용 관련 상호 기술 조언,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다.

둘째,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 규제 제도 차이를 인지하고, 적합성 평가의 MRA에 대해 논의수용, 양국 간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인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험, 검사, 인증, 측정을 포함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39) 중·페루 FTA TBT협정문 참고

40) 중·싱가포르 FTA TBT협정문 참고

상호 인정 협정 또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상대 영역 내 평가기관에서 실시된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TBT협정에 의해 양국 간 체결된 적합성 평가 절차 상호 인정 협정 및 합의는 제58조 및 최종 부속서에 명시하고 있다.

(4) 중·뉴질랜드 FTA TBT 협정⁴¹⁾

첫째, 투명성은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 질의 차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제·개정과정참여불가) 최소 60일 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를 허용한다. 그리고 기술 규정 범위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필수 요건과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새롭게 인증, 지정된 시험설비 및 인증기관에 대해 최신 정보를 빠른 시일 내 상대국과 교환해야 한다. 관련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가 최근 시행된 기술 규정에 인용되거나 부합하는 경우, 상대국에 전자적 또는 다른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둘째, 중국 최초로 ‘전기 전자 설비에 관한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적합성 평가 결과 수용 거부 시, 사유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셋째, 해당 조항 이행을 위해 규제 제도, 사태 분석, 위험 정보, 제품 금지 및 리콜, 제품 감시활동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우수 규제 관행이 협력하고 있다.

(5) 중·파키스탄 FTA TBT협정의 내용⁴²⁾

중·파키스탄 FTA TBT 협정의 목적은 WTO TBT 협정의 이행과 무역을 촉진한다. 또한, 양국 간 교역과 관련된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한다.

첫째, 투명성 조항 분석은 양 당사국은 WTO / TBT 협정에 규정된 투명성 요구 사항에 따라 협력하고, 당사국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양 당사국은 각국의 최신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각국의 구조, 조직 및 내부 부서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적합성 평가 절차 조항은 관련 국제 표준이 있거나, 초안을 작성 규정,

41) 중·뉴질랜드 FTA TBT협정문 참고

42) 중·파키스탄 FTA TBT협정문 참고

양 당사국은 기술 표준 및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의 기초로서 국제 표준 또는 국제 표준의 관련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공동 협력 조항 분석은 양국 간 교역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양 당사국은 WTO 협정의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관련 기관에 공동협력을 강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3. 양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 기술 장벽 비교 분석

한·중 FTA의 TBT 협정 비교 분석 앞에 <표3-2>와 <표3-3>를 참고 하면, 한국은 2017년 10월까지 칠레, EFTA, EU, 페루, ASEAN, 인도,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의 국가들과 FTA가 발효된다. 현재까지 총 15건의 FTA를 발효·타결하였고, 이 중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한·EU, 한·미,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중, 한·뉴질랜드 등 9건의 FTA의 기체결, FTA 협정문이 TBT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 체결한 FTA TBT 협정문은 대체로 정의, 투명성, 적용 범위, 기술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미 FTA 및 한·EU FTA는 다른 FTA에 비해 WTO에서 체결된 TBT협정 이상의 의무를 포함하는 WTO TBT 협정의 WTO플러스(WTO+)적인 형식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FTA TBT협정문은 주로 정의, 기술 표준, 기술 규정 및 적용 범위, 일반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규정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미FTA 및 한·EU FTA의 경우, TBT협정문의 일반적인 조항을 비롯하여 자동차 기술 표준 및 부록 등 다른 FTA와는 차별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0까지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등 총 14건의 FTA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6년 발효한 중·칠레 FTA 이후에 체결한 모든 국가와 지역의 FTA에서 TBT 관련 조항을 별도로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코스타리카, 중·스위스, 중·페루, 중·한 등 7건

의 FTA는 별도의 TBT조항을 구성하였고 다른 5건의 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체결한 FTA TBT 협정의 조항을 살펴보면 적용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한 방식 등 서로 유사한 범위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 개도국 혹은 선진국 등 국가별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한 TBT조항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현재까지 기체결한 TBT협정 조항을 살펴보면 목적 및 적용 범위, 국제 표준의 사용,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인정, 투명성 확보, 공동 협력, 조정 위원회(이하 TBT 위원회)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TBT조항은 각 국가의 기술 규제 정책, 협정 특성 또는 산업별 주요 교역(민감) 품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양국의 WTO TBT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협정문을 구성한다.

중국이 기체결한 14건의 FTA TBT 협정문은 적용 범위, 기술 규정 및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기술 협력 및 TBT위원회 등 조항을 포함하여 평균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중 TBT협정문은 상호 관심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중국이 체결한 FTA TBT 조항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중 간 체결한 FTA TBT 협정은 중국이 체결한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소비자 제품 안전, 표시 및 라벨링, 국경 조치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적용범위, 기술규정에 대한 기술협력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다.⁴³⁾

제2절 한·중 FTA를 통한 무역 기술 장벽의 내용

1. 투명성

제3장 제1절에서 이미 많은 국가의 FTA TBT협정의 투명성을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투명성 조항에 있어 각 당사국이 제안하거나 채택한 자국의 표준, 기술규

43) 유세별,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 (TBT) 협정비교 및 정책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pp2~4

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결과를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제·개정 및 개발과정에서 상대국 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즉, 한국의 FTA TBT 협정과 중국의 경우 자국의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제·개정 과정에서 상대국의 참여 시 허용하는 것보다 전자적 수단으로 결과만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3-1>을 참고하면,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제·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상대국이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 시 채택된 기술규정의 시행 시기 연장 요청도 가능하도록 규정된다.

결국, 한·중 FTA TBT 협정 내 투명성 조항 중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제·개정 과정에서 상대국 참여 허용에 대한 조항은 중국의 기체결 TBT 협정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나머지 조항은 양국이 기체결한 TBT협정 조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된다.

투명성 조항은 <표3-5>와 같다.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는 절차 제·개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상대국 의견에 신속한 회신 등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항 채택 수준은 여타의 기체결한 TBT협정과 유사하다.⁴⁴⁾

<표3-5>한·중 FTA TBT 투명성 조항 분석

FTA 기체결국	한국	중국
한·중	제안된 표준 기술 규정 등에 대해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 허용. 상대국 요청 시, 채택되거나 제안 중인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채택된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지.	

자료: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2018.03.16

2. 국제표준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의 대부분은 WTO TBT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 표준 또는 관련 표준을 활용

44)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2018.03.16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 TBT 협정 제5조 4항에 따르면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의 근거로 부적절한 경우만을 국제표준 사용거부 인정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에서만 예외적으로 부적절한 경우 뿐 아니라 비효과적인 경우도 양국의 표준 관련 조치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반면, 중국은 페루와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FTA TBT 조항에서 WTO TBT 협정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표준을 사용하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될 경우 국제 표준을 채택함에 있어 거부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중 FTA TBT 협정에서 ‘국제 표준’ 조항은 대체로 양국이 기체결한 협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WTO TBT 협정을 준수하는 방식을 택한다.

양국은 국제표준 활용에 관련하여 최근 체결 또는 타결된 FTA에서는 대체로 WTO TBT 협정에 기인한 방식대로 모범 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준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한·중 FTA TBT 조항에서는 ISO, IEC, ITU, CAC 등 특정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 개발된 국제 표준을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WTO TBT 협정 제4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자국 및 회원국 내 표준 기관이 회원으로 등록된 이른바 지역 표준 기관이 표준의 준비·채택 및 적용에 대한 모범관행 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3. 적합성 평가 절차

한국이 기체결한 FTA TBT 조항에서는 상대국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메커니즘 존재를 인정하고, 적합성 평가 기관의 내국민대우,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 수용촉진, 적합성 평가 기관 채택·지정 및 인정, 양자 간 적합성 평가 기관의 상호 인정 협정 추진 및 체결에 관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FTA TBT 조항에서는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 기관 승인에 대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내국민대우가 보장되도록 규정한다.

한·페루 FTA의 경우 동 조항에 대해 내국민대우 보장의 준수 의무가 없으나 한·칠레 FTA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⁴⁵⁾

특히, MRA를 체결함에 있어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기체결 FTA TBT 협정에서는 양국 간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을 위해 평가 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양국 동의하에 특정 산업(품목)에 대한 MRA 체결이 상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TBT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기체결 TBT 협정조항은 한국의 TBT 조항과 유사하나, 적합성 평가 절차와 결과 수용 여부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즉, 상대국 영역 내에서 실시된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를 수용하기에 앞서서 상대국 평가 기관의 기술 능력(technical competence)과 관련한 사안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FTA에서는 MRA 또는 관련 협정을 통해 상대국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수행한 평가절차 및 결과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중국이 칠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 등과 맺은 FTA TBT 협정에는 상대국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수행한 평가절차 및 결과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된다.

특히,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정을 부속서 14에 포함시킨다.

다만, 뉴질랜드는 자체 독자적 적합성 평가 기구가 없어, 중·뉴질랜드 MRA는 사실상 뉴질랜드가 중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용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양국은 상대국 영역 내에서 실시된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를 수용함에 있어 평가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하고, 상대 측 평가결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의무적으로 보

45) 유세별,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 (TBT) 협정비교 및 정책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2018, pp13~15

장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적합성 평가에 대한 MRA의 경우 중국은 중·뉴질랜드 FTA(제97조, 부속서 14)를 제외하고는 인정한 사례가 없다.

<표3-6>한·중 FTA TBT 적합성 평가 절차 조항 분석

FTA 기체결국	한국	중국
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수용 및 인정합의,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 자격부여의 인정절차채택, 양국 간 적합성 평가가절차간 자발적 약정체결 가능,SDoC수용) *상기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적합성 평가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해 양국 적합성 평가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력 장려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 *MRA 협상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고려 *적합성 평가절차 비용 및 시간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 협력 	

자료: 한국과 중국의 기 체결한 FTA TBT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작성.2018.03.22.

아울러, 양국은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표3-6> 상호 인정을 위한 교섭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내CCC 인증 간소화를 위한 품목별 MRA 체결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SDoC(사후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사전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업체들이 비대칭적 불편함을 호소하며 중국 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4. 공동 협력

한국이 맺은 FTA TBT 협정에서는 양자 간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분야의 협력 강화 목적의 투명성 확보, 우수 규제 관행(이하GRP: Good Regulatory Practice)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정합,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등의 규정이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선진 또는 신흥 교역국 체결 협정에 따라 다소

상이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선진 교역국과의 협정에서는 WTO TBT 체계 이행을 주목적으로 하며,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해 국제 표준과 투명성 제고 및 평가 기관 인정에 대한 조항 등을 포괄한다. 반면 칠레, 페루, 아세안 등 신흥 교역국과의 협정에서는 양국 간 제도 및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규정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협력을 추구한다.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WTO TBT 협정 이행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 교역국 중심 조항과 기술 규정 개발 관련 정보 교환에 중점을 둔 신흥 교역국 위주의 협정 조항이 혼재되어 있다.

중국의 체결한 FTA TBT 협정의 경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우수 규제 관행의 투명성 확보, 국제 표준과의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인정 등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공동 협력 관련 조항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상대국 시장에 원활한 접근을 위한 상호간 이해 증진 및 정보 교환 등의 협력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상호간 기술 조언 및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는 WTO TBT 체계에 근거한 GRP에 대한 협력 장려)

한·중 FTA TBT 협정에서 양국은 각기 기체결한 TBT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협력 범위 및 이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국 내 운영·설립 시 협력, 신기술관련 규제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국제 공인 성적서 (IECEE/CB) 기반의 시험 성적서 상호 수용 등과 같이 기존과 차별화된 조항도 마련한다.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제·개정 및 개발 과정에 상대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조항은 없으나 해당 표준 조치 개발에 대해 조언 제공 및 정보 제공 등 기술 협력 강화를 촉진하는 조항은 있다.

양국은 기존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국 내 운영·설립에 대한 조항을 추가, 국내 시험 기관들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중국 진출기업 및 국내기업들에 대해 CCC 시험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증시간 및 비

용 단축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안전인증을 위한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를 시험결과로 상호간 수용하도록 독려하는 조항을 채택하는 등 대중 수출 기업의 시험 인증 애로 완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

<3-7표>주요 기체결 FTA TBT협정문 비교표

상대국가	싱가포르	미국	인도	EU	중국	베트남
투명성	N/A	*정보공개 (웹사이트운영) *제·개정 과정상대국 참여 *코멘트 공개	정보교환	*정보공개(웹사이트운 영) *제·개정 과정 상대국 참여	*의견제시6 0일부여 *공표된 기 술규정인지 보장	*의견 제시기간60 일부여 *정보공개(웹사이트운 영)
협의채널	TBT공동위 원회	TBT위원회 (매년)	SPS/TBT공 동작업반	TBT조정자(필요시작업 반구성)	TBT위원회 (매년)	TBT위원회 (필요시)
기술장벽해 소 매커니즘	MRA체결(전기 및 전자장비, 전기통신기 기)	통신장비분 야MRA (APEC-TE L MRA II 가입)	MRA체결근 거마련(통신 기기, 전기 전자기기)	MRA체결근 거마련	IECEE-CB 시험인증서 수용장려 및 MRA체결근 거마련(관심 분야)	MRA체결근 거마련
특이사항	MAR에중점	자동차 작업반 추가	SPS/TBT를 공동으로 다룸	표시 및 라벨링 조항 추가	소비자제품 안전 조항 추가	건축자재,화 장품,의료기 기등특정분 야협력

자료: 국가기술표준 (<http://www.ats.go.kr/content.do?cmsid=361>) 2018.04.22.

사실상 IECEE CB성적서를 상호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용 시료를 해당 국가로 반드시 보내야 함에 따라 처리시간 증가 및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추가로 요구된다.46)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표3-7>과 같다.

46) 유세별,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 (TBT) 협정비교 및 정책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2018, pp16~18

제4장 한·중 FTA협정에서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한·중 FTA협정에서 무역기술장벽 규정의 문제점

앞장에서 한중 양국의 WTO/TBT 통보문 건수, FTA/TBT 주요내용, 양국 기체결한 FTA/TBT의 내용비교를 살펴보면, 중국은 모든 FTA/TBT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대외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이 기체결한 FTA TBT 규정의 비교 분석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장 내용을 토대로 한중 FTA TBT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중 양국의 FTA 협정 중 TBT의 투명성 부분을 살펴보면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에 국내의 이해 관계자는 물론이고 상대국도 비차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상대국에 통보된 기술규정안에 대해 최소 60일이 가능할 경우 90일 이상까지의 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⁷⁾.

한국은 기술 장벽을 통보할 때 각 부처에서 외교를 통해 통보 요청하면, 외교통상부에서는 WTO 사무국에 통보를 하고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으로 통보문을 전달한다. 반대로 타 회원국에서 TBT를 통보할 때는 WTO사무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중국은 무역 장벽에 대한 기술 장벽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관련 규정이 완벽하지 않고 경영 시스템이 과학적으로 충분하지 못해 TBT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 무역 장벽 제도를 구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부적절한 점이 중국의 대외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1. 투명성의 부족

WTO TBT 협정에서 기술 무역 장벽은 주로 3가지 형태의 기술 규정, 표준 및

47) 한·중 FTA TBT협정문 참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포함한다. 기술 규정은 제품 또는 관련 프로세스 및 생산 방법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문서이며, 표준은 공인 기관이 필수 구현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문서이다. 기술 규정과 표준의 차이는 다양한 법적 효과에 있으며 기술 규정은 필수적이다. WTO TBT 협정과 비교할 때 한·중 양국 간의 기술 장벽은 기술 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았으며 기술 규정의 개념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한·중 양국은 FTA협정 체결 시 투명성에 대해 거의 다 제정했지만 시기에 따라 투명성에 대한 강조하는 정도가 다르다.

중국에서는 의무 표준이 기술 규정으로 국가에 통보되므로 중국의 의무 표준은 실제로 기술 규정으로 기능한다. 의무 표준 및 권장 표준은 중국의 현재 표준 관리 시스템에 따라 분리된 두 가지 유형의 표준이다⁴⁸⁾. 의무 표준은 인체 건강, 개인 및 재산 안전, 법 및 행정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표준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표준을 지칭하며 다른 표준은 권장 표준이다. TBT협정은 표준이 의무 사항이 아닌 문서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표준 자체에는 의무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 표준을 의무 표준 및 권장 표준으로 나누는 중국의 관행은 TBT협정의 조항을 위반한다. 의무 표준을 기술 규정으로 대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기술적 규제라는 과학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 기술 표준 및 기술 규정의 부족

표준은 한 국가의 기술 및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구현이며 국가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무역을 발전시키며 시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의 표준 검토 및 표준 개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표준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급속한 발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표준 수준은 국제 표준 및 선진 외국 표준보다 훨씬 낮다. 중국에서 지난 5년간 완료된 4939개의 국가 표준 설정 프로젝트의 통계 분석 결과 2.6%는 1년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11.2%는 2년 이내에 완료되었고 33.8%는 3년 이내에 완료되었다. 5년 이상 동안 18.2%, 10.7%⁴⁹⁾,

48) 孫麗麗, 完善我國技術貿易壁壘體系思考, 中共山西省黨委會, 理論探索, 2008年第6期

49) 중국FTA서비스 사이트, <http://fta.mofcom.gov.cn>, 2018.04.15

미완성인 사람들은 23.5%를 차지했다⁵⁰⁾. 표준 설정 기간이 대부분 2년을 초과하여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프로세스 및 신제품이 적시에 표준에 반영되지 않아 표준 시스템의 과학성, 효과성, 적시성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상호 인정의 활성화

인증이란 제 3자가 제품 및 프로세스가 기술 규정 및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서면으로 보증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인증기관의 평판은 제품 인증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UL (Underwriter Laboratories Inc.의 약어) 1894년에 설립된 Underwriters Laboratories, 영국 표준 협회 (British Standards Institute, 1901년 설립, 영국 표준 협회의 약어), German TUV (1869~2011년 독일 기술 감독 협회 설립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님, 'Technischen Überwachungs-Vereine'의 약자)는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⁵¹⁾. 이 기관이 인증한 제품은 국가별로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대조적으로 중국의 품질 인증은 나중에 시작되었다. 중국은 1978년 9월에 국제 표준화기구에 가입하여 1981년 4월 최초의 인증기관인 중국 전자 부품 인증위원회(China Electronic Component Certification Committee)를 설립하여 인증 시험 작업을 시작했다⁵²⁾.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증기관과 비교하여 중국 최초의 제품 품질 인증위원회는 30년 이내에 설립되었다. 설립 시간이 짧고 인증 기계의 명성이 낮아서 중국 인증의 국제 영향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중국 수출 제품이 재인증이 필요한 다른 국가의 제한에 취약하게 되었다.

50) 중국TBT연구센터 (<http://tbt.testrust.com/>),2018,04,15

51) 陳樸, '我國遭遇技術壁壘的現狀及行業協會在其中應發揮的作用', 經濟與管理, 探求2003年 第2期

52) 薄明瀾, 淺析技術性貿易壁壘與我國對外貿易, 中南財經政法大學經濟學院, International Trade, 2011

제2절 한·중 FTA협정에서 무역 기술 장벽 규정의 개선 방안

1. 투명성 개선

기술 규정의 개념을 소개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표준화 법이 개정되었다. TBT협정의 요구 사항을 분명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국의 무역 장벽에는 기술적 규제에 대한 개념이 없다⁵³⁾. 이를 위해 중국은 먼저 'TBT협정'의 부속서 I의 조항에 따라 기술 규정의 개념을 도입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한다.

국가에 의해 공식화되거나 승인되며 보편적 구속력을 지니고, 국가 제품을 시행하거나 제품 특성 또는 관련 총계를 지정한다. 제품 관련 프로세스 및 생산 방법은 제품 특성과 관련되어야 한다. 기술 규정이 제품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경우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 법'은 2가지 표준 즉, 의무 표준 및 권장 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중소기업 표준을 폐지하여 모든 표준이 TBT협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TBT협정의 정신에 따라 국가 안보, 사기 예방 및 인간 건강과 안전의 보호, 동물 및 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술 규정을 제정하여 기술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동시에 기존 표준을 정리하고 제품 특성 또는 관련 프로세스 및 생산 방법의 표준을 원래 의무 표준의 기술 규정으로 변환해야 한다. 요약하면 기술 규정과 표준 간의 관계가 간소화되어야 하며 기술 규정의 원칙은 의무적이고 표준 자발적이어야 한다. 기술 규정과 표준을 분리하고 보다 표준적인 기술 및 규제 시스템과 표준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 기술 표준 및 기술 규정의 강화

현재 중국의 표준은 국가 표준, 산업 표준, 지역 표준 및 기업 표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 표준 관리위원회는 국가 표준의 수립 및 개정 정보 관리 시스템

53) 孫麗麗, 完善我國技術貿易壁壘體系思考, 中共山西省黨委會, 理論探索, 2008年第6期

템을 적용한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종류는 중국의 현재 표준화 된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국가 표준의 발전의 전체 프로세스의 정보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된다. 국가 표준과 비교하여 업계 표준, 현지 표준 및 기업 표준의 공식화 및 개정은 정보 관리 방법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원래의 관리 방법에 의해 규제된다. 원래의 관리 방법에는 표준 공식의 개정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사항이 부족했지만, 표준 검토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된다. 이러한 종류의 공급은 더 이상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표준의 제형 및 개정 관리를 개혁하고 표준 제형 개정주기 및 짧은 표준의 출판 기간을 단축해 효과적인 표준 검토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개혁을 통해 정적 표준은 역동적인 표준으로 변형되어 표준이 생산 및 운영 또는 경제 건설의 실제 요구 사항을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며 시장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3. 상호 인정 단일화

중국 인증기관의 수준을 높이려면 인증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품질 검사 시스템의 기술 및 장비 조건과 사무 조건을 개선하고 품질 검사 팀의 질을 향상 시키며 국제 지침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인증 표준을 수립하고 국제 표준화기구의 인증을 위한 국제 표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인증기관은 회원국 간의 자격 있는 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의 인증기관과 다자간 상호 인정 협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한다⁵⁴⁾. 중국 인증기관의 평가 결과를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 적합성 평가 기관의 국제적 명성이 향상될 것이다.

54) 陳樸, '我國遭遇技術壁壘的現狀及行業協會在其中應發揮的作用', 經濟與管理, 探求2003年 第2期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1992년 한·중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경제 무역 관계가 심화되고 양국 교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4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2년 5월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제 14차 협상을 거친 후, 2014년 11월 중국과 남한은 실질적 협상을 완료하고, 2015년 6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한반도와 중국의 자유 무역 지대 전략 및 아시아 태평양 경제 무역 패턴의 양자 간 경제 무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통해 양국 무역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내의 약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의 모든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 되어왔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중국은 높은 무역 마찰을 겪었다. 중공업 자유무역 지대의 설립은 한·중 양국 간 무역 마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한·중 FTA의 설립을 통해 중국과 한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한·중 양국 간 상호 투자와 노동 협력의 발전을 기대한다.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관세를 과감히 삭감, 양적 제한을 제거한 후 기술 무역 장벽의 무역 보호주의가 주요 요인이 되었다.

무역 자유화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국은 높은 관세 및 양적 제한과 같은 무역 장벽을 수립하여 필연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비난,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장벽 분야의 기술 장벽 현황과 각국의 기술 장벽 분석 및 양국 간 체결된 FTA TBT 규칙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연구의 한계점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은 중국의 3대 교역 상대국이며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중계 무역을 포함한 중국 수출의 약 75%가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및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경제 주체는 기술 무역 장벽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기술적 무역 장벽의 대다수는 이 세 경제 주체에서 비롯된다. 제품 수출의 지리적 방향에 따라 중국은 기술 무역 장벽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과학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중국의 수출력은 기술적인 내용과 품질이 낮다.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적인 품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10년에서 20년 정도 뒤떨어져 있고 수출과정 구조에 반영되고 있으며 노동 집약 제품과 저부가가치 자본 집약형 수출 제품이 지배적이고 부가가치 기술 자본이 추가된다. 집약 제품 수출은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과 등급으로 탈바꿈하는 지속적인 개선이 중국 수출의 기술적 한계를 향상시켰다.

중국은 WTO의 다자간 무역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술 무역 장벽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원이 부족한 중국은 WTO의 무역 분쟁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다.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기술적 제한을 다루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참고문헌>

1. 국내·외 문헌:

- 김인지, 한중 FTA 추진 시 기술장벽 부문의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안주석,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왕상환, WTO뉴라운드와 기술무역장벽, 신론사, 2005.
- 유새별, 한중FTA 무역상 기술장벽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 협정팀 연구원, 2018.
- 田宇鎮, FTA 시대 한중 기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忠南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4.
- 盛美娟, 關於應對技術貿易壁壘新趨勢的思考, 煙台大學, ECONOMIC SURVEY, 2005年 第5版.
- 陳樸, 我國遭遇技術壁壘的現狀及行業協會在其中應發揮的作用, 經濟與管理, 探求2003年 第2期.
- 孫麗麗, 完善我國技術貿易壁壘體系思考, 中共山西省黨委會, 理論探索, 2008年第6期.
- 薄明瀾, 淺析技術性貿易壁壘與我國對外貿易, 中南財經政法大學經濟學院, International Trade, 2011
- 郭林宇, 韓國農產品技術性貿易措施研究, 國際交流, 2012年 第9期.
- 盛美娟, 關於應對技術貿易壁壘新趨勢的思考, 煙台大學, 2005.
- 那力, 何誌鵬, 《wto與環境保護》, 吉林出版社, 2002.

2. 기타자료:

- 중국TBT연구센터 (<http://tbt.testrust.com/>)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knowtbt.kr/main.do>)
- 중국FTA서비스사이트 (<http://fta.mofcom.gov.cn>)
-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 중국FTA서비스 사이트 (<http://fta.mofcom.gov.cn>)
-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echnology Barriers
to Trade TBT in Korea-China FTA

Miao,Xu(서묘/徐苗)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ng-Woo, La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rapid signing of free trade zones, technical trade barriers have caused a certain negative impact on the export business of various countries. However, at present, we have not much research on technical trade barriers, including Guo He. South Korea occupies the days of the geographical advantages of trade.

The main content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echnical trade barriers of free trade agreements signed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to compare the technical trade barriers of free trade agreements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ind out the technical probl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trade between China, South Korea and China provides a reference.